

발급번호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[ ]생산·판매 제한  
[ ]판매정지·반송      명령서  
[ ]폐기 [ ]회수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명령을 받는 사람	기관·단체명	대표자 성명
	전화번호/Fax	전자우편
	주소	
	목재생산업 종류(등록번호)	
대상제품	품목명	수량
	물품 소재지	
명령내용(의무사항)·이유		
명령이행기간		
그 밖의사항		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4항·제20조제5항·제22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·제21조·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지방산림청장

직인

※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